

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

2024. 3. .

국 토 교 통 부  
(녹색도시과)

#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

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-5-2. (5) 중 “있다”를 “있다(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·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 3-2-1. (2)의 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3-5-3. (1) 중 “국가”를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3-5-3. (1) ③ 중 “그 밖에 국가”를 “국가”로 한다.

3-5-3. (1)에 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

3-5-3. (3) 중 “국가정책 부합성”을 “추진 필요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